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경 과

가. 발 의 자 : 김소영 의원 (찬성자 13명)

나. 의안번호 : 제 1701 호

다. 발의일자 : 2020. 7. 28.

라. 회부일자 : 2020. 8. 10.

2. 제안이유

- 화재, 지진 등 재난 발생 시 노인, 장애인과 같은 안전취약계층은 신체적·정신적 제약으로 인하여 타인의 도움 없이 독립적인 대피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음. 이에 시장으로 하여금 안전취약계층의 특성 및 유형 등을 고려한 대피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함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재난 발생 시 안전취약계층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가. 안전취약계층의 특성 및 유형 등을 고려한 대피방안 마련을 위하여 시장이 노력해야 함을 규정함(안 제57조제4항).

4.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나. 예산 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해당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화재, 지진 등 재난 발생 시 노인, 장애인과 같은 안전취약계층은 신체적·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타인의 도움 없이 독립적인 대피에 어려움이 있어 시장에게 안전취약계층의 특성 및 유형 등을 고려한 대피방안을 마련토록 노력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재난 발생 시 안전취약계층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표] 참조).

[표] 개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7조(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① ~ ③ (생 략) <u><신 설></u>	제57조(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시장은 재난발생 시 안전취약계층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취약계층의 특성 및 유형 등을 고려한 대피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 먼저, ‘안전취약계층’이란 재난 위험의 피해에 쉽게 노출되거나 피해복구가 어려워 안전에 취약한 사람이나 계층을 표현하는 용어로서 일반적으로 ‘재난약자’, ‘안전약자’, ‘재난취약자’ 등의 표현으로도 사용되고 있으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 제3조제9의3호1)는 안전취약계층을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으

1)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9의2. (생 략)

9의3. "안전취약계층"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10. ~ 12. (생 략)

로 정의하고 있으며, 현행 조례 제2조제12호2)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과 더불어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을 포함하여 재난 및 안전에 취약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음.

- 재난이 발생할 경우 일반인들도 대피 및 구조에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안전취약계층인 고령인, 장애인, 영·유아 등은 자력으로 대피하기가 특별히 어렵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큰 위험과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것이 사실임.
- 일례로, 지난 2월 국립재활원에서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화재에 의한 10만명 당 사망자수가 비장애인인 경우 0.6인 반면 장애인인 경우 1.9명으로 3.17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남 있음.

[표] 사고원인별 사망률

(단위 : 10만명당 사망자수)

지역	구분	운수사고	추락	익사	화재	중독	비고
전국	비장애인	9.1	5.2	1.1	0.6	0.6	
	장애인	30.4	14.2	2.9	1.9	1.5	

* 출처: 2018년 사망원인통계(통계청), 2016년 장애와 건강통계(국립재활원)

* 2020년 2월에 2017년 통계 발표(국립재활원)

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1. (생략)

12. "안전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에 취약한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라. 13세 미만의 어린이

마. 그 밖에 재난 및 안전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이 같은 인식의 발로로서 법 제22조에서는 국무총리가 수립해야 하는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생활안전, 교통안전, 산업안전, 시설안전, 범죄안전, 식품안전 외에도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안전관리에 대한 대책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2조(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무총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 ⑦ (생략)

⑧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난에 관한 대책
2. 생활안전, 교통안전, 산업안전, 시설안전, 범죄안전, 식품안전, 안전취약계층 안전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대책

- 법 제31조의2에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표준안의 연구·개발 시 고려사항으로 '안전취약계층의 특성을 반영한 연구·개발'을 포함토록 하고 있음.

제31조의2(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① 제3조제5호가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안전용품의 제공 및 시설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조제5호가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지원이 원활히 수행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지원 및 지도를 할 수 있다.

제34조의5(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운동)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운동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난대응활동계획과 위기관리 매뉴얼이 서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재난에 대하여 재난관리 체계와 관계 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규정한 문서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의 작성 기준이 되며,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이 작성한다. 다만, 다수의 재난관리주관기관이 관련되는 재난에 대해서는 관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작성할 수 있다.
2.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서 규정하는 기능과 역할에 따라 실제 재난 대응에 필요한 조치사항 및 절차를 규정한 문서로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과 관계 기관의 장이 작성한다. 이 경우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위기대응 실무매뉴얼과 제1호에 따른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3.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재난현장에서 임무를 직접 수행하는 기관의 행동조치 절차를 구체적으로 수록한 문서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작성한 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의 장이 작성하되,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다만,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작성 기관의 장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작성한 계획·매뉴얼 등에 재난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포함될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재난유형에 대해서는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이 작성된 것으로 본다.

② ~ ⑧ (생략)

⑨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관리에 필요한 매뉴얼 표준안을 연구·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재난유형에 따른 국민행동요령의 표준화
2. 재난유형에 따른 예방·대비·대응·복구 단계별 조치사항에 관한 연구 및 표준화
3. 재난현장에서의 대응과 상호협력 절차에 관한 연구 및 표준화
4. **안전취약계층의 특성을 반영한 연구·개발**
5. 그 밖에 위기관리에 관한 매뉴얼의 개선·보완에 필요한 사항

⑩ (생략)

○ 또한, 법 제66조의4는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 추진사항으로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관리 강화’를 포함토록 하고 있음.

제66조의4(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응급상황시의 대처요령을 포함한다)
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
3. 안전행동요령 및 기준·절차 등에 관한 지침의 개발·보급
4.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5. 안전 관련 통계 현황의 관리·활용 및 공개

6. 안전에 관한 각종 조사 및 분석

6의2.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관리 강화

7. 그 밖에 안전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활동

② ~ ⑤ (생략)

- 한편, 현행 조례 제15조에는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에 ‘안전취약계층을 고려한 동원명령·대피명령·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를 포함하고 있으며,

제15조(대책본부의 기능) 대책본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총괄·조정
2. 재난의 상황관리 및 안전취약계층을 고려한 동원명령·대피명령·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수습활동
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재정상 조치 요구
5. 자치구 대책본부장 지휘 및 수습 지원
6.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의 발령
7.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8.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
9.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동 조례 제57조에는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시책 수립 지원, 노유자 시설에 사용할 피난기구 설치비용 지원, 안전취약계층의 거주시설에 대한 생활안전환경 개선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제57조(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노유자 시설에 사용할 피난기구 설치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시설의 생활안전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안전취약계층의 특성 및 유형을 고려한 대피방안 마련과 관련

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시장의 노력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등 개정안은 안전취약계층의 재난안전기본권 보장 강화차원에서 의미 있는 조치라 사료됨.

- 참고로, ‘19.6월에 중앙부처 및 각 지자체에 통보된 행정안전부의 “재난분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정 계획”(행정안전부 재난대응정책과-1995, ‘19.6.11.) 주요 개정사항에 안전취약계층 대책 강화 및 재난유형별 행동매뉴얼의 반영을 포함하고 있으며,
- 서울시의 경우, 이미 60개 유형의 재난에 대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중 일부에 장애유형별(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지체장애인, 고차뇌기능장애인, 발달장애인,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 질환자, 치매노인, 임산부 등) 특징·배려사항·대피유도 시 고려사항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붙임] 참조).

[붙임] “서울시 풍수해 재난 현장조치 매뉴얼” 중 안전취약계층 안전관리 사례

[붙임] “서울시 풍수해 재난 현장조치 매뉴얼” 중 안전취약계층 안전관리 사례

□ 안전취약계층 안전관리

장애유형	내용	
시각장애인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힘만으로 피해 상황을 아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시각정보에 의한 긴급사태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익숙한 지역 내에 있더라도, 상황이 급변함에 따라 도움 없이는 평소대로 행동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 대피소 등 익숙하지 않은 장소에서는 이동 등의 행동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혼자서는 신속하게 행동할 수 없다) ○ 시각장애뿐만 아니라 지적장애·청각장애 등 다른 장애도 있는 중복장애인이 있다
	배려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각에 의한 긴급사태 등의 인지가 불가능하거나 한순간에 인지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음성에 의한 정보전달 및 상황설명이 필요하다 ○ 일상생활권 밖에서는 간병인이 없으면 대피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대피유도 등에 도움이 필요하다 ○ 중복장애인인 경우, 장애상황에 따른 추가 지원 요청이 있을 수 있다
	정보 전달시 주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구의 홍보, 그 밖에 생활에 관한 정보 등이 온 때에는 반드시 알린다 ○ 알기 쉬운 어조로 전달한다 ○ 음성 정보로 여러 번 반복한다 ○ 점자나 확대문자 외에, 점화나 축수화, 지문자, 손바닥에 글씨 쓰기 등 둘 이상의 방법을 조합한 의사소통을 취하여 정보제공에 노력한다 ○ 시청각중복장애인통역사·보조인을 대피소 등에 파견한다 ○ 둘 이상의 장애를 동시에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른 장애에 따른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
	대피 유도시 고려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부확인과 대피소로의 대피유도(보행지원)를 누가 할 지를 사전에 결정해둔다 ○ 시각장애이용 지팡이를 확보한다 ○ 일상생활권 내에서도 재난 시에는 주변 환경의 변화로 인해 인지도(認知地圖)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 것을 배려한다
청각장애인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성정보를 전달받기 어렵거나 전달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시각정보가 아닌 위험을 파악하기 어렵고, 음성 대피유도를 인식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 긴급 시에도, 말로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것이 어렵다 ○ 걸보기에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기 어렵다 ○ 청각장애뿐만 아니라 지적장애·지체장애 등 다른 장애도 있는 중복장애인이 있다
	배려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성에 의한 대피명령 및 대피유도를 인식할 수 없으므로, 수화·요약필기·문자·그림 등을 활용한 정보전달 및 상황설명이 필요하다
	정보 전달시 주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면에서 입을 크게 움직이면서 말한다. ○ 문자나 그림을 조합한 필담으로 정보를 전달한다(항상 필기구를 준비해둔다) ○ 시청각중복장애인통역사·보조인, 수화통역자 및 요약필기자를 대피소 등에 파견한다. ○ 게시판·팩스 및 이메일 등을 활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대피소에 문자다중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TV를 설치하도록 노력한다.

	대피 유도시 고려 사항	○ 수화 또는 문자정보로 상황을 설명하고 대피소 등으로 유도한다(필기구 등을 준비한다)
시청각중복 장애인	특징	○ 대피소 등 익숙하지 않은 장소에서는 이동 등이 어렵다(단독대피가 어렵다) ○ 장애의 상태(전맹전농, 약시전농, 전맹난청, 약시난청)별로 정보수집 방법이 다르며, 상황판단이 어렵다
	배려 사항	○ 시각 또는 음성에 의한 긴급사태 등의 인지가 어려우므로, 점화(點話, finger braille), 촉수화(觸手話, tactile signing), 지문자(指文字, fingerspelling), 손바닥에 글씨 쓰기(print-on-palm), 확대문자(large print) 등 개인별 장애상황을 고려한 의사소통 방법을 활용한 정보전달·상황설명이 필요하다 ○ 일상생활권 밖에서는 간병인이 없으면 대피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대피유도 등에 도움이 필요하다 ○ 혼자 있으면 모든 정보가 차단되는 것을 고려한다
	정보 전달시 주의 사항	○ 생활환경이나 장애상황, 장애발생 시기 등에 따라 의사소통 방법도 사람마다 다르다 ○ 의사소통 방법은 점자(점화), 수화(촉수화), 지문자, 필담, 손바닥에 글씨 쓰기, 음성 등이며 둘 이상의 조합으로 의사소통한다 ○ 시·군·구의 홍보, 그 밖에 생활에 관한 정보 등이 온 때에는, 반드시 알린다 ○ 점화나 촉수화, 지문자, 손바닥에 글씨 쓰기 등의 방법으로 상황을 전달한다 ○ 시청각중복장애인통역사·보조인을 대피소 등에 파견한다
	대피 유도시 고려 사항	○ 안부확인과 대피소로의 대피유도(보행지원)를 누가 어떻게 할지 사전에 본인에게 전달하여 결정해둔다 ○ 점화나 촉수화, 지문자, 손바닥에 글씨 쓰기 등의 방법으로 상황을 설명하고, 대피소 등으로 유도한다 ○ 약간 떨어진 곳에 있더라도 지원자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으면, 외톨이가 되었다는 불안을 느낄 수 있으므로, 근처에 있다는 것을 알리는 등 조금이라도 안심할 수 있도록 유의한다
언어장애인 (실어증 등)	특징	○ 긴급 시에도, 말로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것이 어렵다 ○ 겉보기에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기 어렵다
	배려 사항	○ 자신이 처한 상황 등을 말로 전달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수화·필담 등을 활용한 상황파악이 필요하다
	대피 유도시 고려 사항	○ 수화 또는 문자정보로 상황을 설명하고 대피소 등으로 유도한다(필기구 등을 준비한다)
지체장애인	특징	○ 자기 자신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 ○ 특히, 하지장애인 등은 자력으로 대피하는 것이 어렵다
	배려 사항	○ 자력보행이나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휠체어 등의 보조기구가 필요하다 이 경우, 유지관리도구(공기주입, 펌프수리, 공구)도 필요하다

	대피 유도시 고려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력 대피가 어려운 경우에는, 휠체어나 환자운반카 등의 이동용구 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동용구 등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들것·리어카를 사용하거나 업어서 대피시킨다
내부장애인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걸보기에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기 어렵다 ○ 자력 보행이나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 ○ 심장·신장·호흡기 등 기능장애로 인해 인공투석 등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 항상 의약품을 소지해야 하는 사람이 있다 ○ 항상 의료기기(인공호흡기, 산소분배, 가래흡입기 등)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
	배려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력보행이나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휠체어 등 보조기기가 필요하다 ○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휴대할 필요가 있으므로, 의료기관 등에 의한 지원이 필요하다 ○ 인공배설기구 장착자인 경우에는 인공배설기구용 기구가 필요하다
	대피 유도시 고려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소에 사용하는 의료기기를 확보 및 의약품을 휴대한다. ○ 자력 대피가 어려운 경우에는, 휠체어나 환자운반카 등의 이동용구 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동용구 등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들것·리어카를 사용하거나 업어서 대피시킨다.
지적장애인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급격한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 혼자서는 이해 또는 판단하는 것이 어렵고(긴급사태 등에 대한 인식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환경 변화에 크게 동요하는 경우가 있다
	배려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사태 등에 대한 인식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나 환경 변화에 의한 정신적인 동요를 보이는 경우가 있으므로,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를 짧은 단어나 문자, 그림, 사진 등을 사용하여 알기 쉽게 전달하여 사태의 이해를 도모하는 동시에, 본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행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기분을 진정시키면서 안전한 장소로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보 전달시 주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이고 짧은 단어로 알기 쉽게 정보를 전달한다 ○ 그림·지도·문자 등을 조합하여, 알기 쉬운 방법으로 정보를 전달한다 ○ 정신적으로 불안정해지는 경우를 배려한다
	대피 유도시 고려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자 있을 때 위험이 임박한 경우에는, 긴급하게 보호한다 ○ 피해 상황이나 대피소 등의 위치를 짧은 단어나 문자, 그림, 사진 등을 사용하여 알기 쉽게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 직접 유도한다. ○ 동요하고 있는 경우에는, 평소의 지원자를 동행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기분이 진정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신장애인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신적 동요가 격렬해지는 경우가 있다 ○ 스스로 위험을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 평소에 복용하고 있는 약을 소지할 필요가 있다
	배려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 발생 시 정신적 동요가 격렬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기분을 진정시키는 배려가 필요하다 ○ 지속적으로 약을 복용해야 하는 사람이 많으므로, 평소부터 스스로 약의 종류를 파악하도록 지도하며, 의료기관에 의한 지원이 필요하다

	대피 유도시 고려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 상황이나 대피소 등의 위치를 전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무리가 없는 방식으로 유도한다. ○ 동요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간을 내어 기분이 진정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차뇌기능 장애인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시에 여러 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 둘 이상의 지시를 받으면 혼란하는 경우나, 음성으로 받은 지시에 대하여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지 모르는 경우가 있다. ○ 방금 전의 기억 또는 목적지나 장소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다 ○ 긴급 시에도, 궁금한 것이나 원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로 전하거나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 스스로 위험을 판단하여 행동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위험한 장소에 출입하는 경우가 있다 ○ 혼자서는 이해 또는 판단하는 것이 어렵고, 환경 변화에 따른 동요를 보이고, 생각하기 전에 행동하는 경우나, 매번 지시받지 않으면 행동할 수 없는 경우나, 직접 지도 등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 겉보기에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기 어렵다 ○ 답변이 원활하므로 본인에게 장애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할 수 있다”, “알았다”라고 자신있게 답변하지만 실제로는 행동할 수 없다 ○ 갑자기 흥분하거나 화를 내거나 참지 못하는 경우 등이 있다 ○ 자신의 피로를 알아채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배려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억장애 등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가능한 한 사전에 본인의 증상을 파악하여 행동요령이 기재된 메모를 전달하고, 현재 상황이나 앞으로 발생할 일 등을 여러 번 반복하여 설명하는 등 본인의 증상에 맞는 유도 방법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 긴급사태 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를 짧은 단어나 문자, 그림, 사진 등을 사용하여 알기 쉽게 전달하여 사태의 이해를 도모하고, 본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행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한 장소로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 재난 발생 시에는 정신적 동요가 격렬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기분을 진정시킬 필요가 있다 ○ 음식·물자 배급을 기다리지 못하고 화내거나 소란피우는 경우가 있으므로, 가족 대신에 줄을 서주거나 별도배급 등의 대응을 통해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피 유도시 고려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동요령, 중요한 설명·예정은 메모로 전달한다. ○ 그림·지도·문자 등을 조합하여, 알기 쉬운 방법으로 정보를 전달한다. ○ 말을 할 수 없어 곤란해하고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상황을 추측하여 선택지를 주거나 그림·지도를 활용하는 등 표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정신적으로 불안정해지는 경우를 배려하여, 초조해하는 때에는 조용한 장소로 유도하여 침착해질 때까지 기다린다. ○ 같은 내용을 반복하여 묻는 경우에는 잘 보이는 장소에 메모를 붙여놓거나, 반복하여 설명한다.

발달장애인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이 평소와 다르게 변하는 상황이나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서투르므로, 불안한 상태에서 침착성을 잃거나 정신적으로 불안정하게 되어 패닉을 일으키는 경우 등이 있다 ○ 의사소통이 서투르므로, 정보를 한꺼번에 받으면 이해하기 힘들어 하는 경우나 자신의 어려움을 전할 수 없는 경우 등이 있다 ○ 상상하는 것이 서투르므로, 대피의 필요성이나 위험한 장소 또는 행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 청각·촉각 등 감각이 지나치게 예민하여 특정 소리를 싫어하여 귀를 막고 두려워하는 등의 행동을 보이거나,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에 있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 밖에, 편식하거나 특성 옷만 입거나 몸에 닿는 것을 싫어하는 경우가 있다. 반대로 감각이 둔감하여, 치료가 필요한 상처나 상태 불량을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 답변이 원활하므로,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배려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앞으로 일어날 일이 머릿속에 그려지도록, 일정이나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하여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 추상적인 단어는 피하고, 구체적이고 알기 쉬운 단어를 사용하여 확실하게 전달한다. 귀로 들은 것보다 눈으로 본 것을 잘 이해하는 특징이 있으므로, 본인의 이해도를 고려하여 실물·사진·그림이나 단어 등 시각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 ○ 하면 안 되는 것, 가면 안 되는 장소 등이 있는 경우에는,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사전에 확실하게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 ○ 정신적으로 불안해하거나 패닉 등을 일으킨 때에는, 기분이 진정되도록 조용한 장소를 확보하거나 개인실을 준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텐트나 파티션·골판지로 주위의 공간과 구별하는 등의 고안이 필요하다 ○ 청각과민인 경우에는 헤드폰 또는 귀마개를 사용하거나 마음에 드는 것을 준비하는 등을 통해 진정된 상태로 지낼 수 있는 경우도 있다 ○ 부상 또는 상태가 좋지 않다는 민원이 없어도, 몸 상태를 대강 확인하거나 식사·수면 중인 경우에도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정보 전달시 주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상적인 단어는 피하고, 구체적이고 알기 쉬운 단어로 확실하게 전달한다. 발달장애인의 이해도에 따라 실물이나 사진, 그림, 단어 등 시각적인 형태로 전달한다 ○ 미리 알릴 수 있는 사항은 가능한 한 사전에 전달한다 ○ 큰 목소리를 무서워하는 등의 경우가 있으므로, 온화한 목소리로 말을 건다 ○ 한꺼번에 설명하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개별적으로 말을 걸어 이해 여부를 확인한다 ○ 하면 안 되는 것, 가면 안 되는 장소, 만지면 안 되는 것 등이 있는 경우, 사전에 그것을 확실히 전달한다. 「x」 등의 표지나 마크를 사용하여,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표시한다.
	대피 유도시 고려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에 대피유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한 번 행선지, 이동 소요시간, 동행하는 사람 등에 대해 설명한다. ○ 앞으로 일어날 일(할 일, 갈 곳 등)이나 행동요령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알기 쉬운 말로 확실하게 전달한다. ○ 한꺼번에 설명하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개별적으로 대화한다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 질환자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가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각각의 질병 특성을 고려한 대응이 필요하다
	배려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체장애가 있거나 외견상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각각의 병태나 증상에 따른 대피유도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 인공호흡기나 인공투석 등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 만성질환자가 많고, 의약품을 확보하는 데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정보 전달시 주의 사항	<p>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각장애, 청각장애가 있거나 치매를 앓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상태를 파악하여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정보를 전달한다
	대피 유도시 고려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휠체어나 환자 운반카 등의 이동용구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평소에 사용하는 의료기기를 확보 및 의약품을 휴대하도록 철저히 주지시킨다
치매노인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장소·사람을 파악하는 데 혼란하는 경우가 있다 ○ 식사했다는 사실을 잊고 다시 음식을 요구하는 등 최근에 한 일을 완전히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다 ○ 말을 하지 못하거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 주변에 있는 물건의 용도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 급격한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이 어렵다 ○ 옷을 잘 갈아입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 환경 변화에 취약하다(상기 증상은 환경 변화에 의해 크게 좌우되기 쉽다)
	배려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사태 등의 인식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나 환경 변화에 의한 정신적인 동요를 보이는 경우가 있으므로, 평소의 지원자를 동행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기분을 진정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정보 전달시 주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이고 짧은 단어로 천천히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정보를 전달한다
	대피 유도시 고려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요하고 있는 경우에는, 평소의 지원자를 동행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기분이 진정되도록 유의하며 지원한다
임산부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스로 판단하여 행동할 수 있으나,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
	대피 유도시 고려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동 능력은 떨어지나, 스스로 판단하여 행동할 수 있다 ○ 대피 중의 생활을 고려하여, 적절한 대피유도가 필요하다 ○ (대피소에서의 유의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보험 서비스의 제공이나 심리지원 대책 등이 필요하다 - 충분한 영양(영양식품 등)을 섭취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거실의 온도를 조정(신체를 차갑게 하지 않도록)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